

감정평가서

건명	이운주 외 2명 소유물건 (2025타경41626)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법보좌관 정석훈
감정서번호	KJW1-2503-009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김종욱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김종욱

감정평가액	팔억이천팔십이만원정(₩820,820,000.-)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법보좌관 정석훈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매5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운주 외 2명 (2025타경41626)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4.04	2025.03.31 ~ 2025.04.04 2025.04.04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902	토지	902	910,000	820,820,000
	이	하	여	백		
합계					₩820,82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소재 "팽성서부체육공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근거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제 법령 및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 이론에 의거하였음.

II. 대상물건 개요

1. 대상물건의 형상 · 이용상황 및 공법상제한 등

<토 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면적 (㎡)	지목	용도지역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
1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20-2	902	전	생산녹지	203,500

2. 기준시점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이라 함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본건 감정평가지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일자인 2025년 04월 04일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의 가격조사기간은 2025년 03월 31일부터 2025년 04월 04일임.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시장가치라 함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가치로 결정하였음.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Ⅳ.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하 "실무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에 실무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가는 기준제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건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대상물건(토지 등)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며,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와 제12조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하되, 타 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과 시장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3. 기타 사항

본건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거 하였으며, 본건 토지에 대한 지적경계 및 면적, 이용상황 등에 대한 판단은 관련 공부자료 및 탐문조사, 목측 등을 통해 판단하였으므로 정확한 지적경계 등에 대한 확인은 측량 등이 필요함.

V.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공시지가기준법의 의의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2)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함.

(2025.01.01 기준)

기호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본정리 16-2	3,335	답	전	생산녹지	소로 각지	사다리 평지	211,700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수정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 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음.

(경기도 평택시)

일련번호 (용도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	비 고
A (녹지)	2025.01.01. ~ 2025.04.04.	0.486	2025.01.01 ~ 2025.02.28 : 0.310 2025.02.01 ~ 2025.02.28 : 0.140 $(1 + 0.00310) * (1 + 0.00140 * 35/28)$ ≈ 1.00486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2025년 03월, 04월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되어 직전 월인 2025년 02월의 지가변동률을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4)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1.000).

(5)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치(농경지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조 건	항 목	세항목
접 근 조 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 연 조 건	일조 등	일조, 통풍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 지 조 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 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정도
행정적 조 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등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2) 개별요인 비교

일련 번호	표준지 구분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비 고
1	A		1.50	1.00	0.98	1.00	1.00	1.470	본건은 표준지 대비 경작의 편부 등에서 열세이나, 농로의 상태,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에서 우세함.

(6) 그 밖의 요인 보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 12. 28), 대법원판례(1998.7.10선고 98두6067, 1993.9.10.선고 92누16300)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선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1) 인근 감정평가선례 및 거래사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구분	소재지 지 번	면 적 (㎡)	지목	용도 지역	단가 (원/㎡)	기준시점 (거래시점)	목적 등
선례1	본정리 ○○○	2,528	전	생산녹지	437,000	2024.03.12.	경매
선례2	본정리 ○○○	628	답	생산녹지	965,000	2024.08.09.	경매
선례3	본정리 ○○○	628	답	생산녹지	910,000	2022.03.28.	담보

2)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a) 비교사례의 선정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지목 등이 동일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감정평가선례 또는 거래사례인, "선례1" 을 선정하여, "선례1-표준지A" 과 비교하였음.

b) 사례등 기준 비교표준지가격

평가선례/거래사례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가액						
구분	선례/사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선례1	437,000	1.00	1.02505	1.000	1.386	620,854

① 사정보정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선례로 적정성이 인정됨(1.00).

② 시점수정치

선례1 : (2024.03.12. ~ 2025.04.04., 녹지) : 1.02505(2.505%)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지가변동률 계산 인용)

③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선례 등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1.0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④ 개별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와 거래사례 등의 비교)

구분	표준지 구분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비 고
선례 1	A		1.40	1.00	0.99	1.00	1.00	1.386	표준지는 선례 대비 경작의 편부 등에서 열세이나, 농로의 상태,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에서 우세함.

c) 기준시점 당시의 비교표준지가격

시점수정후 표준지 공시지가 가액					
구분	공시지가 (원/m ²)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m ²)
표준지A	211,700	1.00486			212,729

d) 평택시 팽성읍 경매통계분석

(자료출처 : 부동산태인)

용도	총낙찰가율(%)	평균낙찰가율(%)	낙찰건수(건)	비고
토지	49.91	50.38	31	최근1년간

e) 격차율 산정

평가선례/거래사례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가액과 시점수정후 표준지공시지가 가액의 격차율			
표준지	평가선례/ 거래사례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가액	시점수정후 표준지공시지가 가액	격차율
A	620,854	212,729	2.919

상기 산정된 기준시점 당시의 비교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사례를 기준한 가격의 격차와 인근지역 내 유사토지의 지가수준과 평가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그 밖의 요인 보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정은 아래와 같이 보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시산가격의 결정

일련 번호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211,700	1.00486	1.000	1.470	2.91	909,990	910,000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시산가격의 결정

(1) 거래사례비교법의 의의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구분	소재지 지 번	면 적 (㎡)	지목	용도지역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비 고
사례1	분정리 ○○○	628	답	생산녹지	907,643	2022.04.11.	-

2) 비교사례의 선정

본건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거래사례로 대상물건과 물적 유사성이 유사하며, 지리적 근접성 등을 감안하되, 정상 거래사례로 판단되는 <사례1>을 선정함.

(3)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1.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시점수정

사례1 : (2022.04.11. ~ 2025.04.04., 녹지) : 1.07881(7.881%)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지가변동률 계산 인용)

(5)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와 거래사례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1.000).

(6) 개별요인 비교

일련 번호	사례 구분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비 고
1	사례1		1.00	1.00	0.97	1.00	1.00	0.970	본건은 사례 대비 경작의 편부 등에서 열세임.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시산가격(비준가격)의 결정

일련 번호	거래사례단가 (원/m ²)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가격 (원/m ²)	비준가격 (원/m ²)
1	907,643	1.00	1.07881	1.000	0.970	949,799	950,000

V.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각 방식에 의한 토지시산가액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비 고
1	910,000	950,000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토지 감정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은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3.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일련번호	적용단가 (원/㎡)	면적(㎡) / 수량	감정평가액 (원)	비 고
1	910,000	902	820,820,000	-
합 계	-		<u>820,820,000</u>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본정리	20-2	전	생산녹지지역	902	902	910,000	820,820,000	
합 계								₩820,820,0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소재 "팽성서부체육공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소규모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은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삼각형 토지로서, 목전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서측 및 동측으로 각각 종로 및 세로(농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녹지지역, 종로1류(폭 20m~25m)(접합),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 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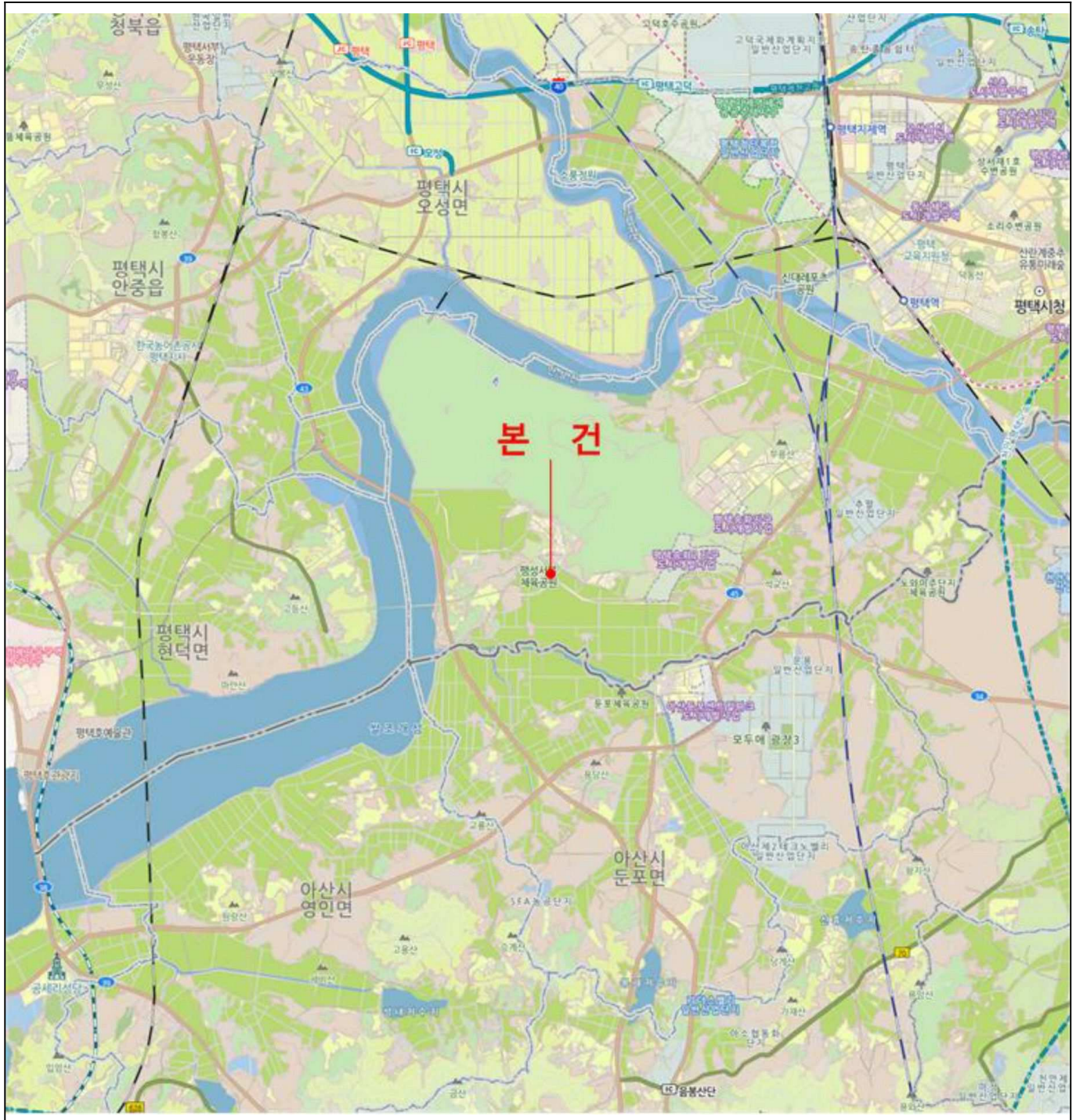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20-2



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20-2



지 적 도

<축척 없음>



항공 사진





